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코로나 극복 영립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지급요건

- 1 '20.12.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재배품목에 버섯·산나물·약초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 ('21.4.1. 기준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 2 2019년 대비 2020년 버섯·산나물·약초류 매출이 감소한 자 (단, 2020년 버섯·산나물·약초류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지원방법

- 100만원 (선불 충전카드, 사용처 일부 제한)
- 사용기간 : 발급일 ~ '21.8.31(화)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중복수급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지원대상

-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재배)을 재배하며,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지급요건

- 1 '20.12.31. 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공부지목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 5,000㎡ 미만**인 자 (표고지목은 20㎡이상 5,000㎡ 미만) ('21.4.1. 기준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 2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지원방법

- 30만원 (선불 충전카드, 사용처 일부 제한)
- 사용기간 : 발급일 ~ '21.8.31(화)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중복수급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해양수산부)

※ 중복 수급 제한 항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여됩니다.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021. 4. 30(금) * 접수순위 반영

신청기관

-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01 신청서 접수

02 서류심사 및 중복체크

03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04 바우처 지급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구비서류

-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 농지 및 임야의 상세 경영정보가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21. 4. 1. 이후 발급본) 1부
- ☑️ 2019년 대비 2020년의 임업경영에 의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참고1 인정가능한 판매증빙서류

- 출하 등 납품 시: 다음의 자와 체결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직거래 시: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기재된 영수증 (통장입금내역 및 택배영수증 포함, 간이영수증 제외)

참고2 바우처 지급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구비서류

-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 농지 및 임야의 상세 경영정보가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21. 4. 1. 이후 발급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 주민등록 등본 (2021. 4. 1. 이후 발급본) 1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질문1 농업경영체 등록 기관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답변 '농지'에서 경영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임야'에서 경영하는 경우는 지방산림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두 번째 장인 「항목별 상세현황」에서 '5. 농지 등 농작물 재배'에 기재된 토지는 농관원에 등록된 토지이며, '6. 임야 및 임업경영'에 기재된 토지는 산림청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의 경우 농업경영 등록확인서 「항목별 상세현황」 - '6. 임야 및 임업경영'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질문2 소규모 임가 바우처의 지급 요건에서 5,000㎡ 미만 임야는 산림청에 등록된 임야만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항목별 상세현황」 - '5. 농지 등 농작물 재배'에 기재된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5. 농지 등 농작물 재배'의 공부지목 임야인 토지와 '6. 임야 및 임업경영'의 공부지목 임야인 토지의 재배면적을 모두 합쳐 5,00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삭제 필지 [] 표시, []미표시), []전체 미표시

번호 (등록/삭제)	농지 등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농지 등 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등록 일자	삭제 일자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경작	미이용 휴경	폐경	재배 면적	노지 면적			시설 종류
						✓							

6. 임야 및 임업경영 (삭제 필지 [] 표시, []미표시), []전체 미표시

번호 (등록/삭제)	소재지	경영방식		경영형태	임야면적(㎡)				
		임목생산	임산물재배		공부	실제 경영	미이용 휴경	폐경	
						✓			

질문3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복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중복수급불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 한개 사업에 대해 중복가능하며, 소규모 임가 영림지원 바우처 또한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